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8 - 2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26나1253 손해배상(저)

원고, 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피고, 피항소인 및 부대항소인

11. L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목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소31632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L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 L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L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 등을 제작, 배급하는 회사로, 2024. 7. 2. 창작한 영상저작물(극영화)인 'M'에 대하여 2024. 8. 12.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들은 각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1) 피고 B는 2024. 9. 8. N를 이용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M'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2358 저작권법위반 사건).

2) 피고 C는 2024. 9. 8.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화저작물인 'M'을 무단으로 배포하여 N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C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25년 형제4959호 사건).

3) 피고 D는 2024. 9. 7.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M'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받고 불특정 다수가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D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법검찰청 2024년 형제68599호 사건).

4) 피고 E는 2024. 9. 7.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상저작물인 'M'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E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법검찰청 부천지청 2024년 형제27433호 사건).

5) 피고 F는 2024. 9. 8.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N에 접속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저작물 'M'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및 공유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



고 F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25년 형제4601호 사건).

6) 피고 G은 2024. 9. 7. 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저작물 'M' 파일을 N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게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G은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4년 형제71130호 사건).

7) 피고 H는 2024. 9. 7.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N를 통해 원고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M'을 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H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법검찰청 부천지청 2024년 형제26543호 사건).

8) 피고 I는 2024. 9. 7. N를 이용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다수의 N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I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25년 형제4285호 사건).

9) 피고 J은 2024. 9. 7. 파일공유 사이트 N를 이용하여 원고의 영화저작물인 'M'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복제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J은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법검찰청 부천지청 2024년 형제29490호 사건).

10) 피고 K은 2024. 9. 7.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N를 이용하여 원고가 영상저작권을 가진 'M'을 불특정 다수의 N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K은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



방검찰청 2024년 형제38517호 사건).

11) 피고 L은 2024. 9. 7.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인 'M'을 다운 및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L은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30495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N'라는 동일한 매체로 원고가 제작한 'M'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하고 영화의 일부 파일을 각각 소유하여 공동으로 타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피고들은 N 프로그램에서 공동 범죄행위로 하나의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들로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자체 수익 기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체 불법 유포로 인한 손해액을 28,8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인 'M' 영상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다만, 불법행위가 각기 독립하여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



립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28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더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의 각 침해행위 태양, 피고들의 각 저작재산권 침해 기간, 피고들의 각 침해행위로 인한 'M' 영상저작물의 무단 전파 가능성, 'M' 영상저작물의 배급 형태 등에 따라 원고가 저작재산권 행사 시 통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M'을 OTT 서비스에서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의 가격), 'M' 영상물의 공개 이후 관람객의 수나 관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피고 1인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 **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은 2025. 8. 18.부터, 피고 C는 2025. 6. 18.부터, 피고 D은 2025. 8. 16.부터, 피고 E는 2025. 6. 27.부터, 피고 F는 2025. 8.



23.부터, 피고 G은 2025. 10. 17.부터, 피고 H는 2025. 6. 26.부터, 피고 I는 2025. 6. 19.부터, 피고 L은 2025. 8. 7.부터, 피고 J은 2025. 6. 28.부터, 피고 K은 2025. 6. 1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6. 1.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L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L의 주장(부대항소이유)

피고 L은 'M' 영상물을 배포, 공중송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침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 L은 'M' 영상물을 다운 및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는 피고 L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L이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L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L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L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20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L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